

·작성부서	경영지원본부 홍보부 커뮤니케이션팀		
·담당자	팀장 : 신향선 (☎ 02-3774-4081) 팀원 : 김율 (☎ 02-3774-4082)		
·배포일	2016. 12. 30(금)	·배포부서	홍보부 (☎ 02-3774-4082-5)

※ 이 자료는 1월 2일(월)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

2017년 달라지는 증권시장 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

< 2017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주요 내용 >

- ① (유/코/넥)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('17.6월(예정))
- ② (코) 이익 미실현 기업도 일정요건 충족 시 상장 허용('17.1월)
- ③ (코)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확대('17.1월)
- ④ (유/코) 투자판단 중요정보 신속 제공 등 공시 적시성 강화('17.1월)

1. (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)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. 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결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. ('17.6월(예정))

① **(현황)**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회원(증권회사 등)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*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거래증거금 제도는 파생 상품시장에만 도입되어 있을 뿐, 증권시장에는 미도입

* (자본시장법 제396조) ②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·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힘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 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

< 참고 : 거래증거금 제도 >

◇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(美·英·日·홍콩 등) 증시에서 도입·운영 중이나, 국내 증권시장(유가증권시장/코스닥시장/코넥스시장)은 미도입

위탁자

위탁증거금
(운영중)

회원

거래증거금
(파생시장 O
증권시장 X)

거래소

지급보증

② (개선)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('15.6월) 등에 따라 시장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하지 않도록, 거래소의 결제이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 위험관리수단(거래증거금 등) 도입 필요

① (부과대상)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(ETF,ETN,ELW)

- 거래증거금 부과의 기본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(증권 등)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므로,
 - 결제주기가 T+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당일(T) 또는 익일(T+1)인 채권*은 추가 검토 후 도입 추진
- * Repo 및 일반채권은 당일 16:30 결제, 국채는 익일 9시 결제

② (산출방법)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^①과 변동증거금액^②을 산출하여 합산

-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^③을 대상으로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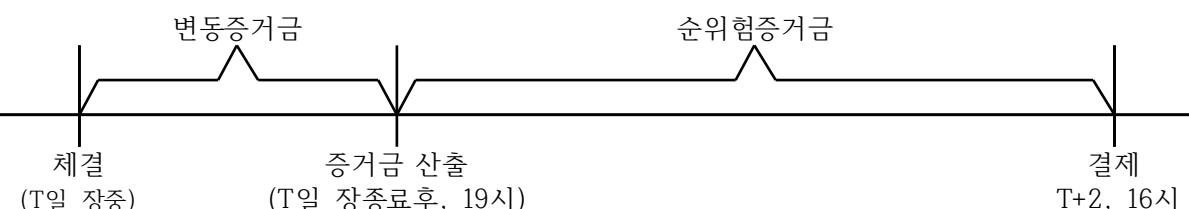
①순위험증거금액 :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(손실) 커버

②변동증거금액 : 현재 발생된 위험(손실) 커버

③시장급변(주가급락/급등)시 매수 혹은 매도거래 중 일방당사자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가능하므로 양 포지션 중 결제불이행 위험이 큰 금액에 증거금 적용

▶ 거래증거금은 체결시점 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 포지션 가치변동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,

-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 부터 증거금 산출시점(장종료 후 19시) 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며,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 부터 결제 시점(T+2일 16시)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것임



③ (통지·납입시한) 거래소가 거래일 20:00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15:00 이내에 납부

- ④ (예탁수단) 현금, 외화(주요 10개 통화) 및 대용증권(상장증권)
- ⑤ (예탁불이행시 처리)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
- ③ (효과)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,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
-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준수* 가능
- * IMF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한 바 있음('13.7월)
2. (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)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(공모가×발행주식 총수)와 영업기반(성장성)을 갖춘 기업은 “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”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 ('17.1월)
- ① (현황)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(이익)을 중시하여 적자기업들의 상장문호는 제한적*
- * 이익을 실현한 기업이 i) 이익규모(ROE, 당기순익), ii) 외형기반(매출/시총), iii) 성장성 (매출/증가율)을 갖춘 경우 상장이 가능
- ② (개선)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
- ① 현행 외형기반(매출/시총) 요건을 확대,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적자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
 - ②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하여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.
- * 단,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%보장 등 풋백옵션(환매청구권) 부여 [세부내용은 금투협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”에 반영 예정]
- ③ (효과)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확대

< 상장요건 중 이익규모등 요건 개선 전후 비교 >

구분	현행	개선후
대상	현재 이익을 실현한 기업	적자기업까지 상장문호 확대
이익 규모 등 요건	(1) 일정규모 이익실현기업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ROE 10% 또는 당기순익 20억	(1) 일정규모 이익실현기업(현행 동일)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ROE 10% 또는 당기순익 20억
	(2) 수익기반이 있는 이익실현기업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매출 100억/시총 300억	(2) 매출성장 적자기업까지 확대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매출 100억/시총 300억 ○ 시총 500억&직전 매출액 30억&직전2년평균매출증가율20%(신설)
	(3) 성장성 있는 이익실현기업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매출 50억/매출증가율 20%	(3)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까지 확대 ○ 계속사업이익 有 & 매출 50억/매출증가율 20% ○ 시총 500억 & 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%(신설)

3. (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확대)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집니다. ('17.1월)

① (현황) 창의.혁신적 사업(비즈니스)모델을 보유한 新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조달 등 적시 자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로는 한계* 존재

* 바이오기업 편중, 전문평가기관 중심 제도

② (개선) 현행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확대 개편

①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 신설

-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 심사 청구 허용
- 단, 상장주선인의 “추천” 여부가 상장의 핵심요소인 만큼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* 도입

*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%보장 등 풋백옵션(환매청구권) 부여, 상장주선인 추천 보고서(성장성보고서) 작성 등 [세부내용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” 반영]

② 현행 기술성장기업 평가모델의 다변화

-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을 사업성 항목* 등으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추가
 - * 경영자역량, 사업운용능력, 시장환경 등

③ (효과)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, 상장주선인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

<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>

현 행	개선안
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성장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중소기업	i) <u>상장주선인(증권회사)가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중소기업(추천상장특례)</u> ii)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과 성장성 또는 <u>사업성 평가</u> 결과 A등급이상 중소기업(<u>평가모델 다변화</u>)

4. (공시 적시성 강화)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. 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이 강화됩니다. ('17.1월)

① (현황) 업종 및 상장법인의 특성에 따라 기술계약 등 공시*가 주가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**으로 규정하고 있음

* 기술이전.도입.제휴계약(유가) / 특허권 취득 및 양수.양도(코스닥)

** 호재성 공시사항 및 의무공시대상에 비해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 중 공시여부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('05.12월 도입)

- 아울러 既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공시(정정공시)의 경우 공시시한이 원 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

① 원공시가 수시공시 중 **당일공시** 사항 :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**당일까지** 공시

② 원공시가 수시공시 중 **의일공시** 사항 :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**의일까지** 공시

③ 원공시가 자율공시사항 : **공시시한이 의일까지이므로 변동사실도 사유발생 의일까지** 공시

② (개선) 기술계약 등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당일로 단축

-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포괄주의 의무공시사항으로 이관

- (포괄주의 의무공시사항) 거래소 의무공시사항은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누락이 발생하여
 -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.재무.경영활동 등을 “포괄의무 공시사항”으로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으나(‘16.5.1), 자율공시사항은 포괄의무 공시사항에서 배제
 - 따라서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사항 발생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유도

②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일 당일로 단축

- 정정공시 공시시한 적용에 있어 원공시의 공시시한과 반드시 연동될 이유는 없으며, 오히려 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단축될 필요성이 큰 만큼,
 - 정정공시시한을 원 공시시한과 무관하게 정정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

③ (효과)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
-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(timeliness)에 제공 가능